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 판매 규제 사항 안내문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시행('26. 4. 24)됨에 따라 지역 사회 담배 규제 사항 준수·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자담배(합성니코틴) 판매, '26,4,24.부터 달라집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담배자동판매기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관할 구청

▲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담배사업법」제15조제3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 2의2])

✔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 담배자동판매기는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영업장 내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위반 시, 17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시, 75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2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

✔ 영업장 외부 담배 광고 노출 금지

- 담배 광고는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의 형태로 영업장 내부에는 부착할 수 있으나, 외부에는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건강증진법」제31조의2(벌칙)제4호)

✔ 가향물질 표시 금지

- 가향물질에 대한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향(맛) 표기 불가 (딸기향, 커피향, 수박맛 등)

▲ 위반 시, 17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

✔ 청소년 판매 금지

-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또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되고, 영업장 내부 및 담배자동판매기에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제59조(벌칙)제1호, 제6호, 제7호의3)